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법령번역 접근방법*

이상모**

Sangmo Lee (2021). Approaches to Law Translation Through Paradigm Shift. *Starting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general translation and statutory transl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that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change the paradigm of statutory translation and the translation approaches based on such factors, and explores several cases that were actually reviewed in the statutory translation process. The field of statutory translation must identify a translation method that aptly highlights these differences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the legal hierarchy.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whether the translator and the translated text carry legal effect and the authority to provid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The modification and applic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applied to general statutory translation and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enactment guidelines will allow for a more objective and accurate translatio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Keywords: Law translation, legal terms, paradigm shif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Law Translation Center

주제어: 법령번역, 법령용어,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 본 논문은 2021년 서울 국제통번역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구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장

1. 들어가는 말

지난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영화 ‘기생충’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 자체의 높은 완성도와 더불어,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자막, 그 1인치 장벽을 뛰어넘게” 해준 통역과 번역이 있었다.¹⁾ 영화 ‘기생충’을 번역한 달시 파켓(Darcy Paquet)은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영화에서 등장하였던 음식인 ‘짜파구리’를 들었다. 그리고 영화에서 짜파구리는 ‘라면’과 ‘우동’의 합성어인 ‘ram-don’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서울대’는 ‘Oxford’로, ‘반지하’는 ‘semi-basement’로 번역되었다. 이는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번역으로, 영화의 또 다른 재미와 함께 영화를 맛깔스럽게 만든 훌륭한 번역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의 자막 번역 방법을 법령 번역에 적용할 경우, 같은 평가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동일한 용어가 ‘법령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잘된 번역인가? ‘반지하’를 예를 들어보자. ‘반지하’의 번역인 ‘semi-basement’는 달시 파켓의 말처럼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기에” 법령 번역에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짜파구리’와 ‘서울대’의 번역인 ‘ram-don’과 ‘Oxford’는 반지하와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즉 ‘짜파구리’는 ‘짜파게티’라는 라면과 ‘너구리’라는 라면을 함께 섞어서 끓인 라면으로,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혼합물’이고, ‘ram-don’은 라면과 우동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양자는 서로 다른 물건으로써, 가리키는 목적물이 다르다. 또한 ‘Oxford’는 영국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써, 완전히 다른 대학이다. 서로 다른 목적물과 대학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미치게 될 대상이 달라지게 되어 법령 번역에서는 적합한 번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령은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법령은 일반 문서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령이 일반 언어와 다른 이유는 일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효과는 강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령의 특성으로 인하여 법령 조문의 이해와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쟁은 법원,

1) “달시 파켓부터 사론 최까지...‘기생충’ 성공의 숨은 주역”, YTN 2020년 2월 10일자, https://star.ytn.co.kr/_sn/0117_202002111600577189 (방문일자: 2021.10.27)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사법기관을 통하여 명확하게 된다. 이처럼 법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해석(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사법기관이 당해 사건과 관련된 개별 조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은 특정 법령 조문의 해석에 대한 권한이 있다.

여기서 번역과 법령해석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원문은 번역하는 순간 오역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원문은 원문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그대로 옮기지 않는 한, 아무리 정확하게 번역하더라도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번역은 오역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역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대상 언어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오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역학계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²⁾ 그리고 그러한 논의를 법령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법률 텍스트의 원본과 번역본 사이에 유사한 효과를 의도하면서 원문의 내용 자체에도 충실할 수 있는 법률 등가 이론³⁾이 있다. 일반적인 번역이론을 법령 번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론의 일부분을 수정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 법령 언어가 일반 언어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법령 언어가 일반 언어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법률등가 이론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법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번역결과의 등가성 이외에도 반드시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어떠한 요소들이 법령 번역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항상 번역의 결과물로 인해 법률 효과를 받게 되는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령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법령 번역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령 번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요소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법령 번역 접근방법을 찾아보고, 실제 법령 번역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번역이론과 관련된 논의는 배만호, 배소민, “국제 법률문서의 번역전략—UN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동의안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제12권 2호), pp.165-167.

3) 배만호, 배소민, “국제 법률문서의 번역전략—UN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동의안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제12권 2호), p.166.

2. 법령번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검토요소

2.1. 문제의 소재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효과는 강제성이 있다는 점이 법령이 일반 문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짜파구리’는 ‘ram-don’이라는 번역 이외에도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설명하도록 ‘A dish mixed with Chapaggetti ramen and Neoguri ramen’이라고 할 수도 있고, 라면의 의미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A dish mixed with Chapaggetti noodle and Neoguri noodle’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또한 ‘짜파구리’의 음차 그대로 ‘Chapaguri’로 번역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에는 ‘전세권’ 제도가 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독특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전세권’은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앞선 예와 같이, 전세권은 ‘Jeonsegwon’, ‘Jeonse right’, ‘leased right’, 또는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로 번역할 수 있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중시하는 번역 접근방법에서는 전세권을 ‘Jeonsegwon’ 또는 ‘Jeonse right’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에게는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번역이 된다. 그러나 전세권 제도를 처음 접하는 자에게는 ‘Jeonsegwon’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번역이 된다. 심지어 번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자의 이해를 중시하는 번역 접근방법에서는 독자들을 ‘leased right’ 또는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이 잘된 번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용익물권⁴⁾과 담보물권⁵⁾을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 고유한 성격의 물권인 우리나라 전세권의 의미를 용익물권의 의미로 한정하게 되는 번역으로서, 법적인 의미가 왜곡된다.⁶⁾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전세권의 법적 의미와 같은 제도가 있는 국가가 사용하는 법률상의 용어

4)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5) 담보물권이란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으로써,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6) 김현수, 「법령영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민사법 분야 법령번역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용역보고서, 2020. pp.169-170.

를 그 나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번역방법이겠지만, 통상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용어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완벽히 일치하는 용어가 없는 한,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법은 차선책으로써 불완전하지만 채택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접근방법 중 어떠한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법령 번역에 더욱 적합한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중점을 두고 함께 검토되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본다.

2.2. 법령과 법률자료의 차이

법령 번역은 일반 번역과 구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령과 법률자료간의 차이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자료와 법령은 법률 문건이라는 이름 하에 같은 기준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령과 법률자료는 조금은 다른 번역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률자료란 일반적으로 법학 관련 논문 등을 말하는데, 이는 이차적인 법률자료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반해 법령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차적 법률자료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지니는 단일 문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자료는 법령 전체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법령과는 구분해야 한다.

표 1. 법령과 법률문건의 차이

1차 법률 자료 (Primary 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효력과 구속력 있음 • 국가의 입법기관과 정부가 제정 공포한 법률과 명령 등 • (영미법계) 판례와 결정
2차 법률 자료 (Secondary Materi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음 • 법학 전문 저서, 교재, 법학 논문, 판례 평석 등의 법률 연구와 정보 • 법률 학술지, 법률신문, 법률백과, 법률 평석 등
법률검색도구 (Finding Too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 연감 등

2.3. 법체계의 차이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구분된다. 영미법계란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계로써,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륙법계란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근간으로 하여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 대륙에서 발달한 법체계로써, 일반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등의 사회주의 법계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⁷⁾

이러한 법계간의 차이는 각국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령의 번역에 있어 양 법체계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따라서 대륙법계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영미법계 국가는 당사자주의가 우세하다. 이외에도 배심원 제도와 같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시스템이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계의 차이에 따른 사법절차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

2.4. 법령 위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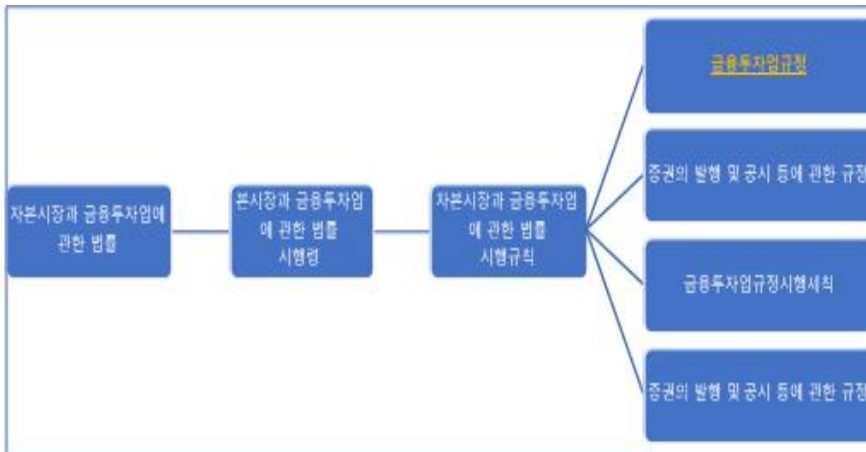
법령은 개개의 법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법률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여 단계별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의 위계가 있고, 각 위계 내에는 수평적으로도 다양한 동위의 법령들이 있으며, 이러한 법령 간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행령은 개별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되고,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 규정들은 상위 수권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상위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번역할 경우, 약관 자체만을 번역하게 되면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비스 이용약관 자체의 번역으로는 의미가 있을 지 몰라도,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문제 되어 사법부의 영역으로 이동하면, 그러한 약관과 관련이 있는 상위법령과의 관계로 함께 검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7) 우리나라의 법령은 대륙법계에 기초하여 영미법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들을 이용하여 동일한 법률용어를 번역하게 될 경우, 약관에서 번역한 대상이 가리키는 것이 전혀 다른 대상물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의 결과로 인해 법률효과를 받게 되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약관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 즉,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상법」 및 「민법」 등 다수의 상위법을 참고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금융투자업 규정」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2009년에 제정한 고시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지난 12년간 70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표 2. 금융투자업규정의 법령위계



이러한 법령 위계 간의 관련성으로 인해 하위법령은 특히 위계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정들은 상위법에서 사용한 용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국문 용어에 다른 번역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두 용어가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다른 법률 효과를 낳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금융투자업 규정」에 나오는 “금융투자 상품 거래 청산회사”⁸⁾의 번역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청산회사”⁹⁾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금융투자업 규정」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청산회사”가 서로 다른 기관을 가리킬 수 있게 되어 통일성과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고, 심지어 오역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위법 또는 규정을 번역할 때 반드시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5. 번역법령의 효력의 차이

법령이 일반 문건 또는 법률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적 구속력 때문이기 때문에, 법령 번역 역시 법적 구속력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번역은 그 결과물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번역된 법령이 일반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게 될 때에는 번역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번역의 결과물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번역된 법령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령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역본 자체가 법령 정보이다. 여기에는 UN 헌장과 같이 국제기구에서 체결한 조약이 해당한다. 한미 FTA 등과 같이 개별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¹⁰⁾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 국가간의 조약은 양 국가의 언어가 사용된 조약문이 모두 정보가 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 언어의 조약문에 오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해야 한다. 이는 해당 조약의 번역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조약 정보이기 때문이다. EU의 법령 역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EU가 관련 규정을 제정할 경우, 제안된 하나의 법안은 23개의 언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다수의 언어로 번역된 법안 모두가 정보가 되고,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
- 8)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 제2항 : 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금융투자 상품거래 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날의 당일
- 9) 「자본시장법」 제9조제17항제2호의2 : ㉞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 10) 양 국가간에 체결된 두 가지 언어의 조약문이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가는 조약의 법적 효력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조약 체결시에 이와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번역법령의 법적 효력 관계

구분		법적 효력	비고
UN 헌장등 국제조약		동일하게 법적 효력 있음 5개언어 정본	The present Charter, of which the Chinese, French, Russian, English,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EU법령		동일하게 법적 효력 있음 24개 언어 정본	하나의 법안은 23개 언어로 번역
각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한국어본과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보이다” 한글본과 영문본이 충돌하면 영문본이 우선
개별 국가 번역 법령	국가 기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국가책임 가능성 존재
	민간	법적 효력이 없음	국가책임 가능성 없음

2.6. 번역 주체의 차이

번역 법령이 법적 효력을 갖는가의 문제는 번역 주체와 관련이 깊다. 즉 공식력 있는 국가기관 또는 정부가 번역 하게 될 경우, 번역의 결과물은 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법령 번역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번역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현재 법령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번역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정부가 외국과 외국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하여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 학계에서 번역을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로펌에서 번역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번역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번역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즉, 번역 주체에 따라서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객관성 유지한 번역이 상세한 설명이 추가된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번역보다 중요할 수 있다.

표 4. 번역 주체에 따른 번역접근방법



2.7. 유권해석과의 관련성

번역 주체와 관련하여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 번역 주체가 법령의 해석¹¹⁾ 즉,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다. 모든 번역은 필연적으로 원문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다른 언어로 번역 하게 된다. 즉 해석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해석의 결과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될 때 해석은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제처와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한다.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번역 주체가 번역하게 될 경우, 보다 유연한 번역 접근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유권해석 기관이 번역을 담당하게 되면 특정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법령 원문을 더욱 충실하게 전달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는 자가 특정 조문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된 번역이 법적 효력이 있는 번역문에 포함될 경우, 결과적으로 유권해석권한이 없는 자가 진행한 번역 법

11) 법(률)해석이란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의 구속성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무권해석)이 있다. 유권해석이란 국가기관 등이 행하는 해석으로 공적 구속성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이 있다. 무권해석이란 문장이나 논리적인 방법으로 법률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으로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이 있는데,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 동일한 법률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령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입법부인 국회를 통해서 제정되지 않은 번역 법령이 실제로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개연성도 있다.

‘심문’이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 보자.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에는 동일하게 ‘심문’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심문과 신문 두 개념의 법적 차이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누가 질의를 할 수 있는가 이다. 심문은 법원 즉, 판사만이 질의를 할 수 있고, 신문은 판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도 함께 질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정부 기관이 이러한 두 용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각 법률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더욱 잘된 번역이다. 따라서 유권해석 기관이 동일한 용어를 다르게 번역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반영된 번역이라고 간주될 수 있고, 그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질문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심문과 신문의 용어는 다르지만, 유권해석을 통하여 동일한 용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번역의 정확성 문제를 벗어난 논의로써, 번역의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법령 번역의 경우에는 번역 주체에 따라 번역 이론적 접근법 이외에 또 다른 고려 요소가 있다. 이처럼 법령 번역을 진행할 경우, 번역 법령의 효력, 번역 주체 및 유권해석과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3.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법령번역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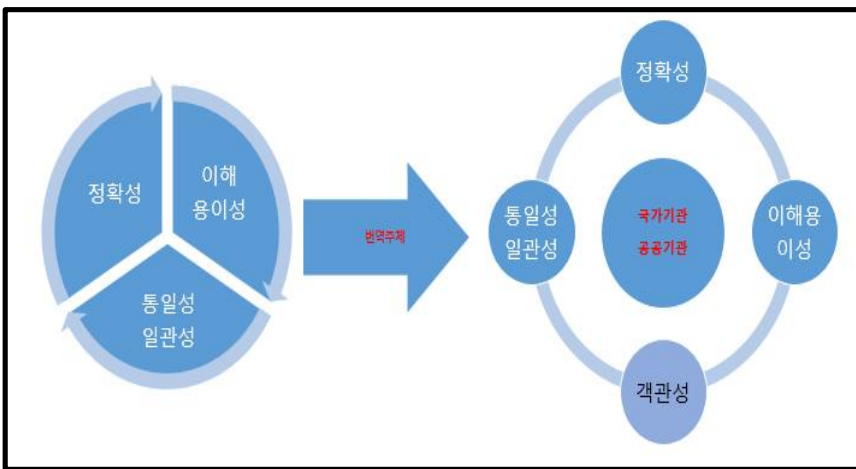
3.1. 번역의 기본원칙의 재정립

일반적으로 번역의 기본원칙으로 정확성, 일관성 및 이해 용이성(가독성)을 들 수 있다. 정확성이란 원문의 내용을 정보의 손실과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일관성이란 하나의 법령안에서 또는 내용을 같이하는 법령 간에 되도록 같은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해 용이성이란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할 때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원문의 취지를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번역의 기본원칙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로 인해 변형되어야 한다.

물론 3가지 원칙이 완벽히 융합되어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법체계와 법문화로 인하여 오역이 필연적으로 이어 지게 되는 법령 번역의 경우, 이러한 3가지 원칙에 완벽하게 부합한 방법을 모색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정확성과 이해 용이성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충적이다. 즉, 각 국가별로 법적 또는 문화적 차이가 있고, 원문에 있는 내용을 원문 국가의 문법이나 용어에 부합하게 번역하게 되면, 독자는 낯선 어 문이나 생소한 용어를 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번역은 비문 또는 어색한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독자에게 부합 하도록 문장 구조를 변경하고 설명을 부가하게 될 때, 번역 주체에 따라 유권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도 있다.¹²⁾ 따라서 이 러한 두 원칙을 적절히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필자는 이것이 바로 객 관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성의 원칙¹³⁾은 번역 주체에 따라 달리 수정 적용되어야 한다.

표 5. 법령에 대한 일반적 번역원칙의 수정



객관성은 절대적·형식적 객관성과 상대적·실질적 객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형식적 객관성이란 원문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으로 번역

12) 물론 이러한 상이한 해석이 유권해석이 있는 기관을 통하여 진행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13) 객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객관성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의 원칙으로 명명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적·실질적 객관성이란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어느 정도 원문을 훼손하여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객관성의 원칙은 번역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달리 채택되어야 한다. 즉 번역된 법령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거나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번역 주체는 유권해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해용이성은 떨어지더라도 원문의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절대적·형식적 객관성의 관점에서 번역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법적 효력을 가지거나 그렇게 추정될 개연성이 낮은 번역 주체는 이해용이성을 중시하는 상대적·실질적 객관성의 입장에서 번역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3.2. 객관성 유지할 수 있는 표현방법의 적용

그렇다면 번역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표현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일반적인 번역의 경우, 의미가 모호하다면 번역자가 부연 설명이나 각주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 번역시에는 이러한 부가적인 설명을 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주나 부연설명은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국제조약에서는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조약에서 사용되는 각주는 본문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조약 본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¹⁴⁾ 따라서 번역가가 추가한 각주나 설명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거나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오인될 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령은 매우 특수한 형태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바로 ‘전단’, ‘후단’, ‘본문’, ‘단서’ 등과 같은 용어¹⁵⁾이다. 예를 들어 특정 조문이 매우 길거나 복잡할 경우, 이러한 문장을 단문 또는 복문으로 바꾸어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조문은 그 자체로는 명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형된 구문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에서 나타나는 전단, 후단, 본문, 단서 등과 결합하게 될 경우, 그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법령 원문 그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는 시행

14) 한미FTA 제24.1조: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5) 「민법」 제1038조 :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 ();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6조 :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제949조 :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종종 발생한다. 즉 원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류를 대처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즉 ① 그대로 두고 번역하기, ② 문자적으로 번역하되 [sic] 표시하기, ③ 오류를 수정하여 번역하되 오류에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기, ④ 오류를 수정하여 번역한 것을 역자주 등을 달아 표기하기, ⑤ 올바르게 번역하고 원문도 수정하기 등이 있다¹⁶⁾. 이러한 문제 역시 법령 번역을 진행할 경우, 번역 법령의 효력, 번역 주체 및 유권 해석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번역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3.3. 정형화된 표현에 대한 철저한 일관성 적용

법률은 일정한 법률요건이 성립되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모든 개별 법령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연구보고서¹⁷⁾에 따르면, 개별 법령들은 법률요건과 법률 효과를 규정하기 위해 상당히 정형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처소격, 직접목적어, 동사의 형태를 보이거나,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동사의 형태를 보이는 구문들도 많고, 직접목적어, 동사와 간접 목적어, 동사의 구문들로 다수가 있다. 이러한 법령의 정형화된 구문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령 제정시 적용하는 관련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제처에서 법령 입안 심사기준을 작성하여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관련 법령 심사를 통해 법령 조문을 정비한다. 따라서 법률마다 사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구문이 달리 번역될 경우, 그 역시 다른 해석으로 오인될 수 있다. 따라서 정형화된 표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번역해야 한다.

16) Chesterman, Andrew & Wagner, Emma (2002) Can theory help translators? A dialogue between the ivory tower and the wordface. Manchester: St Jerome. P.31, 이지은 외, 「한영 법령번역지침」, 한국법제연구원, 2020, p.14에서 재인용

17) 구명철 등, 국문법령의 법률용어와 상용어구에 대한 코퍼스 분석, 2020, 한국법제연구원 용역 보고서 참조

표 6. 법령에 나타나는 정형화된 표현

단어구문	구성(어휘수)	빈도등급 평균	단어구문	구성(어휘수)	빈도등급 평균
예시(또는) 다음과 같다	3	1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	2
법은 공포한 날부터	3	1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4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3	2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1	무기 또는 _년 이상의 징역(에)	5	2
이 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1	_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	2
이 조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	2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1	다른 법률의 개정	3	2
이 법은 공포 후	4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2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3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	2
다음 각 호(의)(에)(서)(의)	3	1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2
같은 법 제 _조(에)	3	1	법 시행 당시	3	2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6	1	법은 공포 후 _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2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2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1	상품 또는 용역(의)(을)	3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1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3	2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2
대 3년이 되는	3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2
3년이 되는 시점	3	2	정하는 바에 따라	3	2
대 3년이 되는 시점	4	2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2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4	2	_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2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2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4	2
공포 후 _개월이 경과한	4	2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예시	5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3	2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	2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5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4	2
_년 이상의 징역(에)	3	2	일월공고할 한 분부터	3	2

차소격(...에)	직접목적어	동사	절대빈도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동사	절대빈도
날(에)	신고(을/를)	수리하다	95	관계인에게	이(을/를)	내보이다	224
(그) 밖(에)	위법행위(을/를)	시정하다	58	신고인에게	여부(을/를)	통지하다	140
경우(에)	이(을/를)	준용하다	54	관계인에게	이(을/를)	보이다	126
건축위원회(에)	심(을/를)	신청하다	47	장에게	합조(을/를)	요청하다	65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를)	신청하다	40	신고인에게	연장(을/를)	통지하다	58
이내(에)	의견(을/를)	제출하다	39	신청인에게	여부(을/를)	통지하다	53
내(에)	의견(을/를)	제출하다	37	신청인에게	연장(을/를)	통지하다	3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위원회법」(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을/를)	제출하다	33	사관에게	하(을/를)	끼리다	18
익금(에)	금액(을/를)	산입하다	31	타인에게	비밀(을/를)	누설하다	17
상(하)에	사람(을/를)	이르다	29	관계인에게	문서(을/를)	내주다	16
표(하)에	영향(을/를)	미치다	27	관계인에게	중표(을/를)	보이다	16
(제, 조, 항, 제, 호)(의)	금액(을/를)	따르다	26	관계인에게	질문(을/를)	하다	16
항(하)에	선박(을/를)	사용하다	26	한강부장관에게	결과(을/를)	보고하다	15
금융위에	참부서류(을/를)	제출하다	22	신청인에게	결과(을/를)	알리다	15
이내(에)	결정(을/를)	하다	22	세무서장에게	비밀신고(을/를)	하다	15
익금(에)	이상(을/를)	산입하다	21	시·도지사에게	일부(을/를)	위임하다	14
날(에)	허가(을/를)	하다	21	타인에게	손해(을/를)	가져다	13
(그) 밖(에)	공익(을/를)	해지다	21	신청인에게	결과(을/를)	통보하다	13
금융위원회(에)	사실(을/를)	보고하다	20	국제행정당에게	일부(을/를)	위탁하다	12
국회에	교섭단체(을/를)	구성하다	19	당사자에게	결정서(을/를)	송달하다	11

3.4.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기타 검토요소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과 같이, 외국에서도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법령을 제정한다. 이러한 지침은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해당 언어로 번역할 때

참고한다면, 정확성, 일관성, 이해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지침¹⁸⁾에 따르면 먼저 주문이 나오고 다음에 조건문이 나오도록 하거나, 문장의 서두에서 불필요한 “But” 사용은 삼가며,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을, 명사보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되도록 “shall”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특정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게 될 경우, 영국의 지침을 준수하게 되면 보다 적합한 법령 번역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¹⁹⁾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목적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든지, 수식하는 말은 수식받는 말 가까이에 두어야 한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외국어를 정비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령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지양하고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에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영어로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용어가 법제처의 우리말 순화기준에 따라 “covered bond”를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주 쉽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게 된다.

3.5. 관련문제: 사법통역의 적용가능성

법령 번역과 관련된 문제로써 사법 통역을 들 수 있다. 즉 법령 번역의 접근 방법을 사법 통역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가? 사법 통역이란 법정에서 진행되는 통역으로서, 법정 통역²⁰⁾이라고도 하는데, 법령 번역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즉 재판에서 법관은 통역자의 입을 통하여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증을 형성하며,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된다. 이 경우, 통역자의 통역과 번역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으로 통역 또는 번역해야 한다. 즉 법률번역의 경우에 대입시키면, 통역자 또는 번역자의 번역은 권한

18) Office of the Parliamentary Counsel Drafting Guidan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rafting-bills-for-parliament> (방문일자: 2021.10.27) 참조.

19) 정부입법지원센터 (lawmaking.go.kr) 홈페이지, <https://community.lawmaking.go.kr/lmKnlg/abRprStd> (방문일자: 2021.10.27) 참조.

20)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진행되는 통역은 개인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의 통역이 있다.

있는 주체가 진행한 법적 효력이 있는 번역이다.

형사재판을 예로 들어보자. 통역사 또는 번역사가 통역 또는 번역 할 때 통번역 서비스를 받게 되는 대상을 위하여 부연 설명을 추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통번역의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원문 또는 원 질의와는 다른 의미에 기초하여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번역사가 스스로 추가한 설명이나 의견은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법정 통번역은 절대적 형식적 객관성의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오역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법정 통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다. 즉 법정에서 한 발언이 실수가 있거나 잘못되었더라도 그대로 통역해야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취지만을 통역하지 말아야 한다.²¹⁾

4. 법령번역의 실제

대한민국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1991년부터 대한민국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²²⁾ 이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30년간 법령 번역을 진행하면서 축적되었던 경험을 통하여, 법령을 번역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영문법령은 한국 법령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어떠한 법적 또는 공식적 효력이 없다.

4.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가 있다. 동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21) 법원행정처, 「법정 통역인 편람」(영어), 2016, pp.7-8

22)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과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내용은 이상모(2021) 「기계번역을 활용한 법령번역의 실제와 과제」, 『T&I Review』 11(1) 참조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²³⁾

“북한이탈주민”을 번역할 경우에는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의 번역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등의 5가지 이유의 경우에 인정하는 지위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는 제외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refugee”를 사용하여 번역하게 된다면,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법적 지위를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4.2.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라는 용어가 있다. 동법에서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있어 해당 시·도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²⁴⁾

“교육감”을 번역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도지사”의 번역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모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자로써, 선출되는 방식이 유사하다. 따라서 직선제라는 선출방식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교육감”과 “도지사”는 동일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려 번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감 제도가 기존의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지위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한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즉 미국 등의 입법례²⁵⁾를 살펴보면, “Governor”는 보통 주지사로서 지방의 행정 수반을 의미하고,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

25) 하와이 교육법, 302A-1101 Department of education; board of educati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루이지애나 교육법 Louisiana Laws Title 17 Education §644. Superintendent of education

4.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용어가 있다. 동법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행정중심 복합도시²⁶⁾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번역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률(“세종시”와 “특별자치”의 번역례)들과 함께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가 있는가?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③ “특별자치”의 용어는 적절한가? 이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를 구분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분하고 있고, 제10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정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시”로 번역한다면, 영문상으로는 「지방자치법」 규정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구역상 특별자치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종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동시에 사용되는 데, 이러한 경우 “세종시”라고 사용된 약칭을 번역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부득이 “(..)”의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사용하는 “특별자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제주도”로 번역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두 행정구역간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의 용어도 일관성있게 번역해야 한다.

4.4. 영유아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라는 용어가 있다. 동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²⁷⁾ “영유아”를 번역할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형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신생아”, “영아”, “유아”의 번역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²⁸⁾에 따르면, 유아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유아(乳兒)와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인 유아(幼兒)를 말한다. 이러한 용어는 현행 법률에도 혼재되어 사용된다. ²⁹⁾ 또한 「모자보건법」, 「형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는 다음과 같은 “영유아”와 유사한 용어들이 있다.

표 7. 영유아와 관련된 각 법령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 출생 ~ 생후 28일까지 「모자보건법」 · 신생아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모자보건법」 · 영 아 :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형법」 · 영 아 : 만 3세미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유 아 : 만3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유아교육법」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앞선 예에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유아(乳兒)”는 「유아교육법」상의 “유아(幼兒)”와는 같지 않고, 오히려 「형법」상 영아살해³⁰⁾의 “영아(嬰兒)”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또한 “신생아”와 「형법」상 “영아”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는 입법상 개선이 필요한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용어는 각각의 법적 지위가 잘 반영될 수 있는 번역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유아”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같은 용어로 번역 해야 하는지

27) 「영유아보육법」 제2조
 2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해당 용어의 정의,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방문일자: 2021.10.27) 참조.
 29)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2조: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30) 「형법」 제251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영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의미한다.

가 문제 된다. 만약 “신생아”와 “유아”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로 번역한다면,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신생아”로 정의한 「모자보건법」을 번역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또한 관련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Childcare Act에서는 young children으로 사용하고 있고, WHO와 UNICEF는 infant and young child를 생후 24개월까지로 보고 있으며, 미국 질병관리본부센터(CDC)에서는 infant를 0-1세, toddler는 1-3세(36개월), 3-5세는 preschooler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의약품규제조사위원회는 child는 2~11세 사이의 아동, infant는 28일~23개월, children은 2~11세, adolescent는 12세~18세로 구분하고 있다.

4.5. 방송통신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방송통신대학”이라는 용어가 있다. 동법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이다.

“방송통신대학”을 번역할 경우, 「고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및 구법인 「교육법」(“개방대학”의 번역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법률이다. 먼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두고,³¹⁾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³²⁾ 「교육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유형을 규정한다.³³⁾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원격대학에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이 있다. 그리고 현행 「고등교육법」의 전신인 1981년 「교육법」³⁴⁾에 따르면,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이

31)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32)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33)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34) 제81조(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개정 1963·8·7, 1970·1·1, 1977·12·31, 1981·12·31>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사범대학 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4. 술학교·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설치될 수 있다. 이후 1998년에 이르러 「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개 법률로 구분하여 제정되면서, 「교육법」은 폐지되었다. 1998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구)교육법상의 개방대학은 산업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은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를 통칭하는 용어인 방송·통신대학이 나타났다. 그리고 2007년에 「고등교육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4개 대학으로 구분되었고, 이를 원격대학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표 8. 방송통신대학과 관련된 각 법령별 정의

관련 법률	명칭의 변천		
1981년 「교육법」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1998년 「고등교육법」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2007년 「고등교육법」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산업대학

따라서 현행법상 개방대학³⁵⁾은 산업대학을 의미하고, 방송통신대학은 원격대학³⁶⁾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방송통신대학을 개방대학을 의미하는 “Open University”로 표기할 경우, 산업대학을 의미하는 개방대학의 의미가 모호해지게 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인 「고등교육법」과 그 전신인 1981년 「교육법」을 함께 번역해야 할 경우라면 용어의 접근방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최초의 Open University는 1969년 영국에서 설립되었다.³⁷⁾ 이와 유사한 대학으로 일본은 放送大学(영문명: The Open University of Japan)을, 중국은 国家开放大学(영문명: Open University of China), 홍콩은 香港公开大学(영문명: Open University of Hong

35) 산업대학이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37조. 개방대학인 산업대학은 대부분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였고, 청운대학교와 호원대학교 두곳만이 남아 있다.

36) 원격대학이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遠隔教育)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52조

37) 우리나라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설립되었다.

Kong), 대만은 國立空中大學(영문명: National Open University)이 있다.

4.6. 행정사

「행정사법」에는 “행정사”라는 용어가 있다. 동법에서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³⁸⁾

“행정사”를 번역할 경우, 「변호사법」과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변호사”의 번역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행정사”의 용어에 “attorney”를 사용하여 번역하게 될 경우, 행정사가 변호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행정사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³⁹⁾와 일본⁴⁰⁾에만 존재하고 있는 제도이다. 앞서 설명한 ‘전세권’과 같이 이러한 유형의 용어는 번역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행정사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특유의 법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행정사 제도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들과의 정합성과 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의 한국 표준직업분류에는 “행정사”가 “Administrative Agents”로 등록되어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상세정보에서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한 영문으로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를 사용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관간의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관련 용어의 법적 지위가 불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의 사용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attorney는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실제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하는 것으로, attorney가 lawyer보다 더 좁은 개념이다. 즉 모든 attorney가 lawyer이지만, 모든 lawyer가 attorney는 아니다. 따라서 attorney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용어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

38) 「행정사법」 제2조

39) 우리나라는 196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행정사법」으로 변경되었다.

40) 일본은 行政書士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Certified Administrative Procedures Legal Specialist로 번역하고 있다. Japanese Law Translation 홈페이지, 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x=0&y=0&re=01&co=1&ia=03&ja=04&yo=行政書士&gn=&sy=&ht=&no=&bu=&ta=&ky=certified+administrative+procedures+legal+specialist&page=1 (방문일자: 2021.10.27) 참조.

5. 마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은 일정한 법률 요건에 따라 강제성이 부여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하나의 법령 그 자체도로 의미가 있지만, 상위 법과 하위법 그리고 서로 다른 동위법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특정 법률의 개개 조문은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는 자국의 고유한 법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유사하지만 상당히 다른 체계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특수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일반 문서에 대한 번역 접근방법이 적용된다면, 그러한 번역의 결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번역된 법령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전제가 된다면, 그러한 영향은 법적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법령 번역은 일반 번역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하고, 그러한 접근방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법령 번역주체가 번역된 법령의 효력관계이다.

번역 주체와 번역법령의 효력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한 이후에, 법령 조문 자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계와 법령의 위계 등이 반영된 통일성과 일관성 원칙 이외에도, 법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표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입법과 관련된 국내외 지침들을 참고할 경우, 보다 정확한 법령번역이 될 수 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법언(法諺)이 있다. 번역 주체에 따라서는 오역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실질적 주관적인 번역보다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형식적 객관적인 번역이 때로는 보다 적합한 번역의 접근방법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구명철. (2020). 「국문법령의 법률용어와 상용어구에 대한 코퍼스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수. (2020). 「법령영역의 적확성 제고를 위한 민사법 분야 법령번역 개선방안 연구」 법령번역센터 용역보고서.
- 배만호·배소민. (2009). 「국제 법률문서의 번역전략—UN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동의안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161-181.
- 법원행정처. (2016). 「법정 통역인 편람」(영어)
- 법제처. (2019). 「법령입안·심사기준」
- 이상모. (2021). 「기계번역을 활용한 법령번역의 실제와 과제」 『T&I Review』 11(1): 35-56
- 이지은 외. (2020). 「한영 법령번역지침」 한국법제연구원
- Chesterman, Andrew & Wagner, Emma. (2002). *Can theory help translators? A dialogue between the ivory tower and the wordface*. Manchester: St Jerome.

웹사이트

- https://star.ytn.co.kr/_sn/0117_202002111600577189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rafting-bills-for-parliament>
- <https://community.lawmaking.go.kr/lmKnlg/abRprStd>
-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x=0&y=0&re=01&co=1&ia=03&ja=04&yo=行政書士&gn=&sy=&ht=&no=&bu=&ta=&ky=certified+administrative+procedures+legal+specialist&page=1

This paper was received on 19 November 2021; revised on 30 November 2021; and accepted on 3 December 2021.

Author's email address

peacekeeper@klri.re.kr

About the author

Lee Sang-mo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law from Kyung Hee University in 2000 and a Ph.D degree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from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UPL) in 2009. His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WTO, FTA,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Chinese law. He has long been in char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research on ODA-related laws in the KLRI. Now He is responsible for Korean-English and Korean-Chinese legal translation project at Korea Law Translation Center of KLRI since 2018.